

가정 상담

통권502호

2025

06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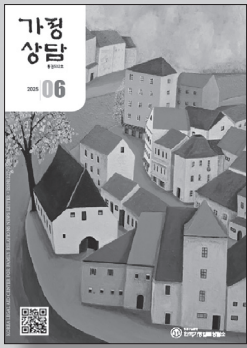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년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지난 2005년 호주제폐지를 이루어낸 상담소에서는 그 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3일 본소 강당에서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관련내용 6면, 관련 기사 35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부 : 부패는
패 :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방 : 방심하지 말고
지 :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❶ |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심포지엄 ❶
- 23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가정
- 32 • 가정폭력상담실
- 33 • 어떻게 할까요
- 34 • 결혼과 인생(244) 영화 이야기
장손 _ 김용언
-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마치고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대한 시선을 다시 생각하며

가족법 개정은 계속 나아가야 할, 언제나 현재진행형인 과제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 5월 23일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잘 마쳤습니다. 가족법 개정을 위해 지나온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늠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저는 상담소를 대표하여 동성동본 금혼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위헌심판제청에 관한 재판에 출석해 사안에 대해 설명했던 일이나 호주제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각종 회의며 심포지엄 개최, 국회 방문 등 그 당시 격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앞서 1970년대 가족법 개정을 위해 61개 여성단체가 결성했던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의 실무자로 일한 바 있는 상담소의 차명희 이사장이 1950년대 상담소에서 시작했던 가족법 개정운동의 흐름을 회고했던 순서는 더욱 각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심포지엄의 진행 과정에서 저는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상담소 창설자인 고 이태영 선생님이 상담소를 창설하기 이전 고시에 합격하고 법원 시보이던 시절에 민법 초안의 문제점을 전해 듣던 시절입니다.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남녀평등이 지켜지지 않은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개정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내내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평등과 부부평등의 가치를 향해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구성원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꾸준히 제정과 개정을 이어 왔습니다. 또한 저는 상담소에 사진 자료로 남아 있는 가족법 개정 운동사의 첫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960년 7월 19일 종로에서 을지로까지 도보행진을 벌인 전국여성단체연합의 축첩 반대 시위입니다. 지금은 거의 잊힌 말이 된 “축첩”,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첩 둔 남편 나라 망친다’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 참으로 절실하고 직관적인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거치면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공공연하게 외도를 하거나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면 최소한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나설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다른 한편 오늘의 젊은 세대는 ‘호주제’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호주’ ‘호주제’를 사수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내, 딸을 차별하고 그 차별을 당연시하던 이들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묻혀 버렸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변화하는 사회에 역행하는 일들은 이렇듯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회상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법과 제도, 관습의 빈틈 탓에 고통당하고 변민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상담소는 이러한 이웃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왔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피해자들, 남녀차별에 우는 여성들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그들입니다. 이태영 선생님은 일찍이 낙후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결과 상담소는 일찍부터 법과 제도의 개정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의식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방향을 상담소 사업으로 구현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법과 제도의 피해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의식은 오히려 깨어있고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데 반해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만 하는 아니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인, 사회 지도층의 일부는 오히려 자기중심적이며 더 완고하고 구태의 연하며 법의 테두리를 좁게 해석하는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어서 개혁과 변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저는 이미 고인이 되셨으나 그 남기신 뜻은 영원히 기억될 두 분을 각별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첫 여성 변호사로서 상담소를 열고 가족법 개정운동에 헌신하셨던 고 이태영 선생님과 한국 가족법의 대가, 고 김주수 선생님입니다. 김주수 선생님은 1955년 27세에 경희대 법대 교수로 부임하실 때부터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당시 민법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셨다고 하며 이후 호주제폐지 때까지 실천적 학자로서 후학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에서 자란 사람은 민주시민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사회와 가정의 구성원 모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는 현실적인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주제로 앞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저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는 가족법 개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끝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항상 변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이루는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삶을 위해 가족법 개정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언제나 상담소가 있을 것입니다.



특집 ①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①*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과제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며¹⁾

차 명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올해는 호주제폐지 20주년의 해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이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1. 제정 당시

정부 수립 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신민법 초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1952년 고시에 합격한 이태영 선생님은 법원 시보 중이였습니다. 그때 한 법전편찬위원으로부터 지금 ‘법전편찬위원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헌법 정신에 맞는 남녀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고 순풍미숙을 전제로 여자 하대 남자 우대 이런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

으셨대요. 그래서 1954년 선생님은 YWCA, 여성문제연구원 등 당시 9개 여성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규합하여 국회, 법원, 대통령에게 호소문과 건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70여년을 이어오고 있는 가족법개정운동의 시작입니다. 이때 건의문에 첨부한 개정항목이 이후 마련되는 개정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태영 선생님이 여성들과 대법원장 면담을 했는데 대법원장 말씀이 초안에서 ‘일자도 못 고친다, 어디 조그만 게 법 한 줄 외웠다고 1,500만 여성이 아무 불평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법을 고치자고 난리를 치느냐’고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섭고 떨리고 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당시 여성단체들이 ‘아내 밝는 자 나라 밝는다, 첩 둔 자 나라 망친다’ 이런 구호로 행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고 함께 가족 보호 운동을 하면서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하시고 그 후 가사심판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후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도 가족법 개정, 가정법원 전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호소문을 내셨습니다.

2. 1970년대

1973년 61개 여성단체가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를 결

* 지난 5월 23일 본소 강당에서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호주제폐지 이후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과 혼인의 변화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과제를 점검하여 미래 가족법의 대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 개의 주제와 그에 따른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세 주제와 토론을 연재로 실는다.

1) 이번 심포지엄 순서 앞에 발표한 차명희 본소 이사장의 회고를 정리하여 게재한다. 차명희 이사장은 1970년대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실무자로 가족법 개정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 온 가족법 개정운동의 산증인이다.

성하고 가족법 개정에 대한 전국적 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시에는 유신헌법 시대잖아요. 그때 세계 여성의 해가 선포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가족계획협회에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에 후원을 해주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법학 교수들이 법안 작성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10개 개정 항목을 정했습니다. 호주제도 폐지, 협의이혼 제도의 합리화 또 상속 제도에 있어서 유류분 제도 신설 등을 담고 10개 항목으로 조문 개정할 걸 추려보니 116페이지, 한 3분의 1을 손대야 하는 거예요. 자문위원들이 밤새며 법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려 했는데 당시 촉진회 회장이었던 유정희 국회의원이 혼자 몰래 호주 제도를 빼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어차피 다 통과 안 될 것 같으니 하나라도 통과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장과 회원 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를 취재했던 한국일보의 노조 지부장 여기자가 이를 빌미로 해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우리는 전국적인 운동을 벌이자고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전국 지회를 결성하기로 했지만 유신헌법반대 운동으로 몰려 지방 회원 단체들이 탈퇴하면서 남는 예산으로 팸플릿 등을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1977년에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동성동본 금혼 규정 때문에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죽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무서워서 우리는 자살한다’는 유서를 남겼어요. 상담소가 바로 여기 옆에 있잖아요. 관광호텔 바로 옆에 그리고 국회가 저기잖아요. 그래서 상담소에서는 동성동본금혼 피해자신고센터를 열어서 피해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함께 살며 아이도 낳았지만 출생신고도 못한 이들이 다 모여들어서 서명운동도 하고 상담소에서는 정하연 극작가 극본으로 ‘사랑의 벽’이라는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1977년에 동성동본 금혼과 호주제를 빼고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다만 한시법으로 1978년 1년 동안만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1차 한시법이 제정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70년대가 지났어요.

3. 1980년대

1980년대 헌법 개정이 있었죠.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족법 개정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84년 ‘가족법개정을위한여성연합회’를 결성합니다. 그때도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이 꽤 있어서 그분들을 믿고 이태영 선생님을 회장으로 73개 여성단체가 모이고 선생님이 회장이 되면서 협동 회원 단체

를 만들자해서 남성 단체들도 모아 113개 단체가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됐거든요. 정부에서도 유엔여성철폐협약에 서명하고 분위기가 참 좋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법안을 작성했는데 국회의원 20명 제안 서명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서명하고도 취소해달라고 전화하기도 하고 서명해 준다고 가면 놀림거리로 삼거나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원서 제출하고 국회의사당에 매일 찾아가고 자료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박종철 사건이 일어나고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가족법 개정운동도 조금 수월해집니다. 국회의원 61명 서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12대 국회가 12월에 만료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동성동본 혼인 한시법이 또 제정되면서 전국에서 버스 몇 백 대를 동원한 정통가족수호협의회인가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1988년 13대 국회가 열리면서 ‘가족법개정을위한여성연합회’와 ‘여성단체연합’ 등이 연대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먼저 그리고 이후에 당선된 사람한테 또 의견을 묻고 서명운동도 벌여 5만 3천 명 정도가 서명한 청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서명운동 과정에서 경찰한테 위협과 방해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종교계 학계 언론 문화계 그래서 소위 사회적 지도자 대상으로 한 300명 따로 서명을 받아서 내기도 하고 각당의 총재 면담도 하는 등 굉장히 용감해졌죠. 그래서 여성의원 주도로 153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가족법 개정안을 발의해 1989년 호주제와 동성동본을 제외하고 법안이 통과됩니다.

4.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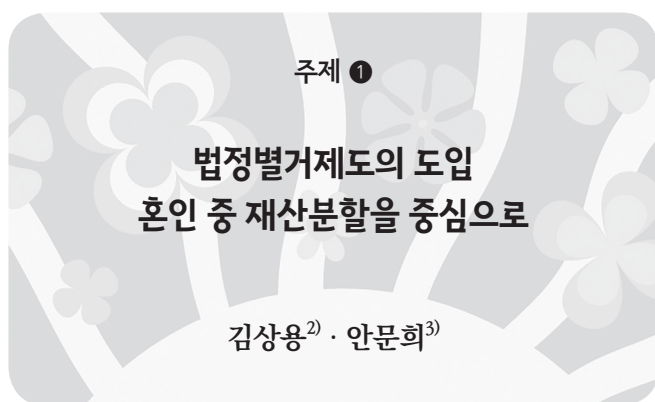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니까 우리 운동의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995년 동성동본금혼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고 19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냅니다.

5. 2000년대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새로운 세대의 운동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상담소 주도로 113개 시민단체가 ‘호주제폐지시민연대’를 결성해 국민 의식조사, 국회의원 의식조사, 토론회, 캠페인, 서명운동, 영화제작과 홍보 등 이렇게 대대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니

까 유럽 측에서도 엄청 극렬하게 결집해서 반대했어요. 하지만 2003년 법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16대 임기 만료로 또 폐지됐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나하나 만나 설득하고 156명의 서명을 받아 17대 국회에서 발의했어요. 2004년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2005년 2월 3일에 현재에서는 호주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고 2005년 3월에는 국회에서는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실무자인 저로서는 이 과정에 함께한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젊은 후배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I. 들어가는 말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⁴⁾ 물론 졸혼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법규범으로 제도화된 것도 아니므로, 그 정확한 개념과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혼인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혼인공동체를 해소하고 혼인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졸혼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실상의 이혼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론과 판례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민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의 이혼상태로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사실상의 이혼상태에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

를 부담하는지, 또 부모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유럽에는 중세시대부터 법정별거⁵⁾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이혼제도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가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유럽사회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인간 사회에서 혼인관계의 사실상 파탄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이혼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법정별거를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동거를 비롯한 혼인의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근대에 들어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법률상 이혼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법정별거제도는 이제 그 효용성을 다하였다는 이유로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1875년 신분등록법 시행과 함께 법정별거제도는 폐지되었다).⁶⁾ 그러나 근대 민법전 제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혼제도와 더불어 여전히 법정별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영국 등).

아래에서는 우선 이러한 나라들이 여전히 법정별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그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 사회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지, 만약 도입한다면 어떻게 규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색한다.

II. 유럽에서 법정별거제도가 존속되는 이유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에서 이혼제도와 더불어 법정별거제도가 병존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법정별거제도가 존재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된 부부는 곧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인 도덕관념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이

2)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한국법학원 연구원

4) 졸혼에 관하여는 류일현, ‘졸혼(卒婚)’과 혼인제도, 가족법연구 제32권 2호(2018), 161면 이하 참조.

5) Trennung von Tisch und Bett. 영어로는 “judicial separation” 또는 “separation from bed and board”라고 한다.

6) Wolf/Lüke/Hax, Scheidung und Scheidungsrecht, S. 42.

혼에 대한 대안으로서 법정별거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셋째,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 때에도 상속이나 사회보장제도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혼 대신 법정별거를 선택할 수 있다.⁷⁾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혼법⁸⁾ 개정 논의 당시 법정별거제도가 이혼에 비하여 실제로 있어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⁹⁾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속시키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위에서 든 이유 이외에도, 법정별거제도의 유지는 부부의 선택지를 넓힘으로써 부부의 자율적 의사와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이며, 이는 당시 스위스 이혼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유럽의 여러 국가(예를 들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법정별거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폴란드에서는 1945년에 법정별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부부에게 관계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1999년에 다시 법정별거제도를 도입하였다.¹⁰⁾

III. 법정별거제도에 관한 입법례¹¹⁾

1. 이탈리아의 법정별거제도

(1) 이혼제도의 도입과 법정별거제도의 존속

가톨릭 교회의 영향하에 있던 중세 이탈리아의 대부분 지

역에서는 혼인비해소(婚姻非解消)의 원칙이 지배하였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점령했던 시기에 프랑스민법전이 이탈리아에 도입되면서(1805년-1814년) 민사혼과 이혼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중들의 의식에 스며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는 못하였다. 나폴레옹의 몰락 후 이전의 교회법이 부활하면서 이혼법은 이탈리아에서 다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인 1970년에야 비로소 이혼제도가 도입되었으나(그전까지 이탈리아에서 혼인의 해소는 사망으로만 가능하였다),¹²⁾ 당시에 현존하고 있던 별거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¹³⁾

(2)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별거

1) 법원을 통한 합의 별거

부부 쌍방이 별거를 원하고 별거의 결과(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 및 부양, 재산분할 등)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에 법정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별거에 관한 합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확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이탈리아민법 제158조 제1항). 법원의 확인은 자녀와 관련된 합의(친권, 양육, 면접교섭, 부양 등)의 내용을 검증하는 기능을 갖는다. 합의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모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부모가 법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은 합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므로, 합의에 의한 별거는 불가능하게 된다(이탈리아민법 제158조 제2항. 이 경우 당사자는 재판에 의한 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

7) BSK ZGB I-Steck/IN, Art. 117 N 1, 2; Botschaft Revision Scheidungsrecht vom 15. November 1995, Nr. 232.1

8) Änderung vom 26. Juni 1998. AS 1999, S. 1118ff.(2000년 1월 1일 시행).

9) 1994년 법정별거 608건, 이혼 15,634건. 1993년 법정별거 540건, 이혼 15,053건. Botschaft Revision Scheidungsrecht vom 15. November 1995, Ziff. 232.1

10) 1999년 5월 12일 개정법률. 1999년 12월 16일 시행. 폴란드 가족 및 후견법 제61/1조-61/6조. Gralla, Die Trennung von Tisch und Bett als neues Institut des polnischen Eherechts, StAZ 2000, 42f; Krakau, Scheidung und nachehelicher Unterhalt in Polen, in: Hofer/Schwab/Henrich(Hrsg.), Scheidung und nachehelicher Unterhalt im europäischen Vergleich, 2003, S. 256.

11) 법정별거제도의 입법례에 관하여는 이화숙, 別居制度 導入을 위한 立法政策의 研究, 법조 통권 619호(2008. 3.), 5면 이하;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별거제도 - 별거의 요건, 절차, 효력 및 종료 -, 경희법학 제54권 4호(2019. 12.), 45면 이하 참조.

12) 1970년 12월 1일. 법률 제898호. 이혼법은 민법전에 규정되지 않았고,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법정별거제도는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Cubeddu-Wiedemann, Scheidung und nachehelicher Unterhalt in Italien, in: Hofer/Schwab/Henrich(Hrsg.), Scheidung und nachehelicher Unterhalt im europäischen Vergleich, 2003, S. 139.

13) Luther, Die Ehetrennung nach italienischem Recht, RabelsZ 1969, 476f.

2) 법원을 통하지 않은 합의 별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는 법원을 통하여 합의 별거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을 통하지 않고 간이하게 합의 별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2014년 9월 12일 법령 제132호 및 2014년 11월 10일 법령 제162호). i)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 돌봄이 필요한 자녀(중증의 장애가 있는 자녀, 무능력자인 자녀) 또는 성년자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신분등록공무원에 대하여 별거의 합의를 제출할 수 있다(위의 법령 제12조). 당사자는 직접 신분등록공무원에게 별거와 별거의 결과(예컨대 별거 후 상대방 배우자의 부양에 관하여 합의된 경우)에 대한 합의를 제출해야 하며(관공서에 준비되어 있는 양식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하여야 한다), 제출일로부터 30일(숙려기간) 내에 다시 신분등록공무원을 방문하여 그 합의를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별거의 합의가 혼인등록부에 기록되면 법원을 통한 법정별거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ii) 미성년자녀, 돌봄이 필요한 자녀(중증의 장애가 있는 자녀, 무능력자인 자녀) 또는 성년자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부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별거 및 그 결과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검사는 합의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별거를 승인하며(위의 법령 제6조), 이로써 별거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재판상 별거

동거의 계속을 참을 수 없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¹⁴⁾ 또는 자녀의 양육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배우자는 법원에 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이탈리아민법 제150조 제3항, 제151조).

재판상 별거의 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법원장은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부부간의 화해를 시도하여야 한다(이탈리아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1항, 제708조 제1항, 제2항).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자녀와 배우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에 관하여 직권으로

임시명령(이 임시명령은 즉시 집행될 수 있다)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한다(이탈리아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3항).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부부의 재산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조사한 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거를 명하는 판결을 한다. 법원이 별거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때에는 별거의 결과(자녀의 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의 분담, 주택의 사용, 배우자에 대한 부양 등)에 대해서도 결정하여야 한다. 혼인파탄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청구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가를 판결문에 기재한다(이탈리아민법 제151조 제2항).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청구를 할 수 없고(이탈리아민법 제156조 제1항. 다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청구는 가능하다. 이탈리아민법 제438조),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에도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이탈리아민법 제585조, 제548조).

(4) 별거의 결과

1) 친권과 양육 및 면접교섭

① 별거 후에도 부모는 계속해서 공동친권자로 남는다(즉 별거와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공동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녀의 양육, 교육, 건강, 거소지정 등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모가 자녀의 희망과 선호 등을 고려하여 합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각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탈리아민법 제337조의3 제3항).

② 미성년자녀에게는 부모의 별거 이후에도 부모 쌍방과 지속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인정된다(이탈리아민법 제337조의3 제1항).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원은 우선 부모에 의한 공동양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부와 모가 어떻게 양육을 분담할 것인지(돌봄 시간, 양육비 등)에 대해서 결정한다(이탈리아민법 제337조의3 제2

14) 부부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별거의 요건인데, 파탄의 원인으로는 중대한 혼인의무 위반, 성격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1975년 이탈리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유책주의가 파탄주의로 대체된 이래,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 NK-BGB/Ramon, Länderbericht Italien, Rn. 71.

항). 최근 유럽에서는 별거(또는 이혼) 후의 공동양육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방식(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어머니의 집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는 방식), 자녀는 한 집에서 생활하고 부모가 교대로 방문하면서 양육하는 방식(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어머니가 자녀의 거소에 머물며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방식) 등이 있다.¹⁵⁾ 따라서 법원이 부모의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공동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¹⁶⁾ 이때에는 그 근거를 상세히 실시하여야 한다(이탈리아민법 제337조의4). 법원이 부모의 일방을 단독양육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자녀와 비양육친간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도 정하여야 한다.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법원은 부모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탈리아민법 제155조, 제337조의3).

2) 자녀에 대한 부양

부모는 각각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여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은 현물급여에 의하여,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방은 금전지급의 방식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한다. 부모가 자녀의 부양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모가 각각 정기급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를 정한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수요, 부모와 동거할 당시의 생활 수준, 자녀가 각각의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공동양육의 경우), 부모 쌍방의 수입,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부 또는 모의 가사노동 및 돌봄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이탈리아민법 제337의3조 제4항). 중증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녀의 부양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녀의 부양에 대한 위의 규정들을 준용한다(이탈리아민법 제337의7조 제2항).

3) 배우자에 대한 부양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별거기간 중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양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충분한 수입이 없거나 부부간에 경제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매월 정기급으로 지급되는 부양료는 부부의 동거 시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액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이탈리아민법 제156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와 같은 부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탈리아민법 제433조). 부양청구권을 포기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가능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양료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이다.¹⁷⁾

4) 재산분할

별거와 동시에 부부공동재산제는 해소되므로,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이탈리아민법 제191조). 1942년 이탈리아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부부재산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5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제가 법정부부재산제로 채택되었다.¹⁸⁾ 부부공동재산제하에서는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부부의 동등한 권리(지분)가 인정된다(이탈리아민법 제177조. 예를 들어 혼인 후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는 가사에 전념하면서 저축하여 주택을 마련한 경우, 이 주택을 남편의 명의로 등기한다고 해도 아내는 주택에 대한 1/2의 공유지분을 갖는다). 따라서 별거에 의해서 부부공동재산제가 해소될 때 부부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이탈리아민법 제191조, 194조 제1항).¹⁹⁾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던 주택을 계속 사용할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일방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이 혼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택의 사

15) 별거(또는 이혼) 후의 공동양육 형태에 관하여는 김주수·김상용, 주석민법 친족(2), 112면 이하 참조.

16) 법원이 공동양육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예를 들면, 부모의 일방과 자녀의 관계가 파탄된 때)를 말한다. NK-BGB/Ramon, Länderbericht Italien, Rn. 96.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탈리아민법 제315의2조 제3항).

17) NK-BGB/Ramon, Länderbericht Italien, Rn. 115.

18) 이러한 개정의 자세한 배경에 대하여는 김상용, 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 법조 통권 554호(2002. 11.), 137면 이하 참조.

19) Wiedemann/Pertot, Länderbericht Italien in Süß/Ring, Eherecht in Europa, Rn. 72f.

용권을 가진 배우자가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타인과 동거 또는 혼인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이탈리아민법 제337의6조).

5) 상속

법정별거 중인 때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별거 중이라고 해도 여전히 배우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재판상 별거를 명하는 판결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이탈리아민법 제585조, 제548조). 따라서 부부 쌍방이 모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다 상속인이 될 수 없다.²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양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이탈리아민법 제548조 제2항).

2. 프랑스의 법정별거제도

(1) 이혼제도의 도입과 법정별거제도의 존속

프랑스에서도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시대에는 혼인은 해소될 수 없다는 원칙이 관철되었다. 이에 따라 이혼은 허용되지 않았으며,²¹⁾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동거의무가 면제되는 법정별거제도가 발전되었다.²²⁾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제

정된 헌법(1791년 9월 3일 제정)은 혼인을 민사상 계약으로 규정하였다.²³⁾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여 「1792년 9월 20일 법」²⁴⁾의 제정 과정에서 혼인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이혼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었다.²⁵⁾ 그 결과 「1792년 9월 20일 법」은 프랑스 최초로 협의이혼제도를 신설하였고, 협의이혼은 신분등록공무원(officier d' tat civil)에 대한 신고에 의해서 성립되었다.²⁶⁾ 「1792년 9월 20일 법」이 이혼을 허용함으로써, 법정별거제도는 이제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²⁷⁾는 이유로 삭제되었다(동법 제6조).

그러나 이와 같이 폐지된 법정별거제도는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그 사이에 「1792년 9월 20일 법」은 종교계와 정치계로부터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타협책으로서 법정별거제도를 다시 도입한 것이다.²⁸⁾ 결과적으로 나폴레옹 민법전은 이혼제도(협의이혼 및 유책이혼)와 법정별거제도의 병존을 선택하였고,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중체제가 유지되고 있다.²⁹⁾

현재 프랑스민법은 제296조 이하에서 법정별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요건은 이혼과 동일하다.

(2)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별거

1) 법원을 통한 합의 별거

부부가 혼인의 파탄 및 별거의 결과(부부재산관계의 청산,

20) Wiedemann/Pertot/Ballerini, Italien in Süß, Erbrecht in Europa, Rn. 79.

21) “Ce que Dieu a uni, que l'homme ne le sépare pas(신이 맺은 것을 인간이 분리할 수 없다)” : Matthieu 19.3, Luc, 16.18, Marc, 10.9; J. Commaille, Le divorce en France: De la réforme de 1975 à la sociologie du divorc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78 et 1980, p. 11; P. Ouliac et J. Malafosse, Histoire du droit privé, Le droit familial, PUF, 1968, p. 182 et s.; 안문희, “2004년 프랑스 이혼법-이혼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63권 제1호, 2013, 146면.

22) André Castaldo et Jean-Philippe Lévy, “L'histoire de la séparation et du divorce en droit canonique”; Anne Lefebvre-Teillard, Introduction historique au droit des personnes et de la famille, PUF, 1998, n° 103.

23) 1791년 9월 3일 헌법 제2장 제7조. “법률은 혼인을 민사상 계약으로만 간주한다.”

24) Loi du 20 septembre 1792.

25) Sicard Germain,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divorce, Presses de l'Université Toulouse Capitole, 2000, p. 427-439.

26) 안문희, “2004년 프랑스 이혼법 이혼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63권 제1호, 2013, 131면.

27) Philippe Malaurie, Hugues Fulchiron, Droit de la famille, LGDJ, 2023, p. 441 et s.

28) Pierre-Antoine Fenet, Recueil complet des travaux préparatoires du Code civil, séparation de corps et le divorce, Tome IX, 1830, 1830, p. 475 et s.

29) Philippe Malaurie, Hugues Fulchiron, Droit de la famille, LGDJ, 2023, p. 442; 물론 그 후에도 프랑스 역사의 변동에 따라 이혼제도와 별거제도 역시 부침을 겪게 된다. 1816년 왕정복고를 계기로 이혼제도는 폐지되었고, 법정별거제도만이 유지되었는데(1816년 5월 8일 법), 제3공화국 시절 1884년 7월 27일 법을 통해서 1816년 5월 8일 법이 폐지되어 이혼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

배우자 부양, 혼인주택의 사용, 자녀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에 합의 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30조). 가정법원 판사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합의하였다고 확신하는 경우 법정별거를 선고한다(별거의 동기 등은 묻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별거의 결과에 대한 합의가 자녀의 복리나 배우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32조).

2) 법원을 통하지 않은 합의 별거

최근에 프랑스민법이 개정되어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합의에 따라 법정별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었다(프랑스민법 제229-1조, 제229-4조).³⁰⁾ 당사자 쌍방은 변호사에 의해서 대리되어야 하며,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별거의 결과(재산분할, 별거 후 부양, 주택의 사용,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된 문서는 쌍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연서를 거쳐 공증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공증인이 합의서를 기록, 보관함으로써 법정별거의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부부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에는 부모의 별거의사를 법정 양식에 따라 자녀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자녀는 가정법원 판사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지 않은 합의 별거는 불가능하다(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을 통한 합의 별거를 할 수 있다).³¹⁾ 또한 일방 배우자가 프랑스민법 제1편(人) 제11장 제2절(요보호성년자를 위한 법적 보호)에 따른 법적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후견제도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하지 않은 합의 별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혼인파탄의 합의에 따른 재판상 별거

혼인의 파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파탄의 사유는 고려되지 않는다), 별거의 결과(재산분할, 별거 후 부양, 주택의 사용,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원에 법정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

233조). 가정법원 판사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별거에 합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정별거를 선고하고 별거의 결과에 대해서 결정한다(프랑스민법 제234조).

(4)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별거

프랑스민법 제237조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별거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사실상 별거한 때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본다(프랑스민법 제237조 제1항). 부부가 동일한 거소에서 거주하지 않고, 적어도 부부 일방에게 별거의 의사가 있는 때에는 사실상 별거가 인정된다. 별거기간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별거의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5)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재판상 별거

부부 일방의 반복되는 심각한 혼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혼인공동생활의 유지가 참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부부의 다른 일방은 법원에 유책사유로 인한 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42조). 배우자의 유책행위(예를 들면 간통)를 용서한 때에는 그 사유로 인한 법정별거를 청구할 수 없다(프랑스민법 제244조 제1항). 화해의 시도 또는 자녀의 양육상 필요에 따라 단기간 동거를 재개한 것은 용서로 간주되지 않는다(프랑스민법 제244조 제3항).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법정별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성이 감경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45조 제1항).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는 부부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프랑스민법 제245조 제2항).

(6) 별거의 결과

1) 친권과 양육 및 면접교섭

별거 후에도 부모는 공동친권자로 남는다. 부와 모는 각자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자녀와 상대방 배우자의 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프랑스민법 제372조, 제373-2조). 부

30) 2016년 11월 18일 법을 통해 개정, 2017년 1월 1일 시행.

31) 프랑스민법 제229-2조, 제230조.

모는 협의하여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자녀의 거소)에 대해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자녀의 공동양육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써 부모가 교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양육방식을 명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73-2-9조). 이 경우 법원은 자녀가 각각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기간과 부모가 분담하게 될 양육비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73-2-1조).

2) 자녀에 대한 부양

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프랑스민법 제373-2-2조).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방식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프랑스민법 제373-2-7조).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판사가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각자의 수입과 재산상태에 따라서 양육비를 분담하며(프랑스민법 제371-2조), 자녀의 부양 수요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자녀의 연령 및 별거 이전의 가족의 생활 수준이 고려된다.³²⁾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의 부양 수요나 양육비채무자인 부 또는 모의 재산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³³⁾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프랑스민법 제371-2조), 대학생인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³⁴⁾

3) 배우자에 대한 부양

법정별거 중에도 부부간에 부양의무는 존속하므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정도와 액수가 결정된다(프랑스민법 제303조 제1항 및 제3항). 일방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부양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부양의무자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중대하게 혼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판사는 부양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07조 제2항, 제303조 제2항). 부양의무자의 재산 사정에 따라 정기급 방식이 아니라 일시금 지급이나 일정한 재산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프랑스민법 제274조 내지 제275-1조, 제277조, 제281조), 이러한 방식으로 부양권리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때에는 보충적으로 정기급 방식의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프랑스민법 제303조 제4항).

4) 재산분할

프랑스민법은 부부공동재산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별거에 의해서 부부공동재산제는 해소되며(프랑스민법 제1441조 제4호), 법정별거 기간 중에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프랑스민법 제302조). 따라서 법정별거 중에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되며, 부부 각자에게 속한다.

부부공동재산제의 해소에 따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프랑스민법 제1401조) 부부간에 동등한 비율로 분할된다(프랑스민법 제1446, 제1445조).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던 주택은 부부 일방의 소유일지라도 혼인기간 동안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없다. 판사가 부부 일방의 소유인 주택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거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단독친권 또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일방에게 그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인정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285-1조 제1항). 가족이 임차주택에서 생활했던 경우에는 법정별거 시에 판사는 가족의 복리(특히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차권을 부부의 일방(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1751조 제2항).

(7) 상속

법정별거 중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는 상속권을 갖는다.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재판상

32) Civ. 1re, 22 mars 2005, D. 2005. IR. 1112; contra Civ. 2e, 2 mars 1994, Bull. civ. II, n° 77; RTD civ. 1994. 847, obs. J. Hauser.

33) Civ. 2e, 21 avril 1982, Bull. civ. II, n° 57, p.40; Gaz. Pal. 1982, 2, pan. 260; D. 1993, 198, note J. Floro; Defrénois 1983, art. 33022, n° 2, obs. J. Massip.

34) A. BÉNABENT, *Droit civil : Droit de la famille, Montchrestien*, p. 238.

별거가 선고된 경우, 유책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개정 전 프랑스민법 제301조 제2문),³⁵⁾ 최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법정별거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합의에 의한 법정별거의 경우 당사자는 협의로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01조).³⁶⁾

IV. 외국의 법정별거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 우리 사회에의 도입 가능성 및 구체적 대안의 모색

1. 우리 사회에서 법정별거제도가 필요한지에 관한 검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에서 법정별거제도는 혼인의 비핵소성을 원칙으로 삼았던 중세 가톨릭의 영향하에서 이혼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과 무관한 우리 사회에 지금 별거제도를 도입해야 할 의의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역사적,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정별거제도가 우리 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법정별거제도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 사이의 법적인 생활공동체의 성립 및 해소와 관련하여 혼인과 이혼이라는 두 가지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이외에 학설과 판례에 따라 사실혼과 사실상의 이혼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민법 규정이 없으므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 그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혼인에 비하여 당사자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가벼운 제도로서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하거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범위에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별거제도를 운영하는 입법례가 적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사람 사이의 법적 결합 및 해소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보다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당사자는 혼인과 이혼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와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민법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도덕적 관념이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이혼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일단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정별거 제도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느끼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대신 일단 법정별거를 시작한다면, 이혼 후의 생활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에 법정별거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는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2. 구체적인 대안

(1) 협의상 별거와 재판상 별거

위에서 본 이탈리아민법과 프랑스민법은 법정별거에 관하여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이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법정별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입법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협의상 별거

현행 협의이혼제도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별거와 별거의 결과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마침으로써 법정별거가 개시되는 방법이다. 전반적으로 민법 제834조 이하의 협의이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자

35) 2004년 5월 26일 이혼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2002년 2월 20일 상원에 제출된 이혼법 개정안의 보고서(252호)에 따르면, 국회(하원)는 법정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정별거 사유와 관계없이 동일해야 하며, 법정별거중인 배우자는 혼인증인 배우자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상속권을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프랑스민법 제301조의 제2문의 삭제를 제안하였다(Proposition de loi portant réforme du divorce, Rapports législatifs, Rapport n° 252 (2001-2002), déposé le 20 février 2002); <https://www.senat.fr/rap/l01-252/l01-25227.html>. 다만 상원은 프랑스민법 제301조 제2문의 삭제 요청을 보류하면서 전적으로 유책인 법정별거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박탈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36)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프랑스민법 제722조), 제301조에 의한 상속포기약정은 예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Döbereiner, in: Süß, Erbrecht in Europa, Länderbericht Frankreich, Rm 132.

녀에 대한 친권,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으면, 양육비부담 조서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도 집행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상 별거의 성립 후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판상 별거

별거와 별거의 결과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재판상 별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재판상 이혼에 관한 민법 제840조 이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이와 별도로 파탄주의에 입각한 별거원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데(다만 이러한 예외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법정별거의 경우에 그대로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법정별거에 있어서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와 달리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해도 큰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별거의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에서 이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데,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반대하는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실제로 파탄된 혼인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을 뿐아니라, 비교법적으로 살펴봐도 파탄주의 이혼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의 학설과 판례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반면에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과 이혼 후 부양 문제, 이혼에 대한 의식 등을 고려해 보면 단기간 내에 유책주의를 파탄주의로 대체하는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방향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 절충안으로서 법정별거에 있어서는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책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재판상 별거가 선고된다고 해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거를 청구한 배우자가 혼인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재혼을 할 수는 없다. 이점에서 유책배우자는 법정별거 청구가 인용

된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거의무와 같은 기본적인 혼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통하여 부부재산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으므로, 독립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별거의 결과

1) 친권과 양육 및 면접교섭

부모가 법정별거를 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혼 시 친권,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민법 규정을 대체로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별거 후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는 우선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별거의 경우 협의상 별거이든 재판상 별거이든 구별하지 않고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럽의 입법례를 보면 별거(또는 이혼) 후의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이 보편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별거나 이혼과 관계없이 부모 쌍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별거나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공동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모 일방의 단독친권으로 변경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법원의 재판을 거쳐 단독친권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자녀와 부모간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별거(또는 이혼) 후의 공동양육을 원칙적인 양육형태로 보고, 부모가 1주일에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실무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별거(또는 이혼) 후의 공동친권 또는 공동양육을 원칙으로 하는 법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실정을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별거(또는 이혼) 후의 공동친권, 공동양육이 원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별거 후에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즉 부부관계는 파탄되었지만, 부모로서는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사례가 보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떤 사회에서 별거(또는 이혼) 후의 공동친권, 공동양육이 보편적인 양육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공동양육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의 아동청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우리 사회에서 법개정을 통하여 별거 후의 공동친권, 공동양육을 원칙으로 정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별거 후의 공동친권, 공동양육이 자녀의 복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 이러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

① 별거 후 자녀에 대한 부양 문제는 이혼 후 양육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부모가 협의에 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부양 수요, 부모의 수입, 재산상태 외에 i) 단독양육의 경우에는 부모 중 누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가, ii) 공동양육의 경우에는 부모 사이에 양육 시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독양육의 경우에는 양육에 들어가는 가사노동과 시간을 참작하여 양육비의 분담비율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 공동양육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모가 담당하는 양육 시간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예를 들어 1주일 중 어머니가 5일간 자녀를 양육하고, 아버지가 2일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비 분담 부분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②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물론 그러한 나라들에서도 각자 부양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혼 후 자신의 수입과 재산으로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장기간(때로는 종신에 걸쳐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각자 부양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이혼 후의 부양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따라서 이혼 후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비교적 단기로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유럽의 입법례에서 법정별거 기간 동안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혼인 해소 후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면, 혼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법정별거 기간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거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양청구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나,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 단계인 별거기간에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의 존속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정별거제도가 도입될 경우 별거기간 중에도 부부간에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부양청구권은 부정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유책배우자에게 부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탈리아 민법, 프랑스 민법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3) 재산분할

유럽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부부 공동재산제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별거 시에도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부부공동재산제는 해소되어 그때까지 형성된 재산은 동등한 비율로 분할된다. 법정별거와 동시에 부부재산관계는 별산제로 전환되므로, 그후에는 이혼을 하게 되어도 다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별거기간 동안에는 부부간에 생활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부부가 서로 기여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분할청구를 인정할 근거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유럽의 상당수 입법례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으로 혼인이 종료되는 때에만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고, 사망으로 인한 해소 시에는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A와 B는 혼인기간이 30년인 부부이고, 세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A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략 B의 재산 중 1/2에 대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와 B의 혼인관계

가 B의 사망으로 해소되는 때에는 A의 법정상속분은 1/3이 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B의 재산을 3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A는 10억원 정도를 상속재산으로 받게 되는데, A가 만일 B의 생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약 15억 정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이 두 가지 사안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정별거제도가 도입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의 사례에서 A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재산분할청구를 함으로써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위의 사례에서 B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이성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감소하여 나중에 A가 상속인이 되어도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A가 굳이 이혼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법정별거의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청구를 함으로써 혼인 중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에 따른 청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A는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4) 상속

법정별거 중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입법례가 나누어져 있다. 벨기에, 덴마크, 영국, 폴란드에서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부정되는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는 별거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도 생존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한다(다만 이탈리아민법은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법정별거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별거 중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법정별거 중이라고 해도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신분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탈리아민법(프

랑스 구민법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과 같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족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을 법정상속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최근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요구가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별거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유책배우자를 법정상속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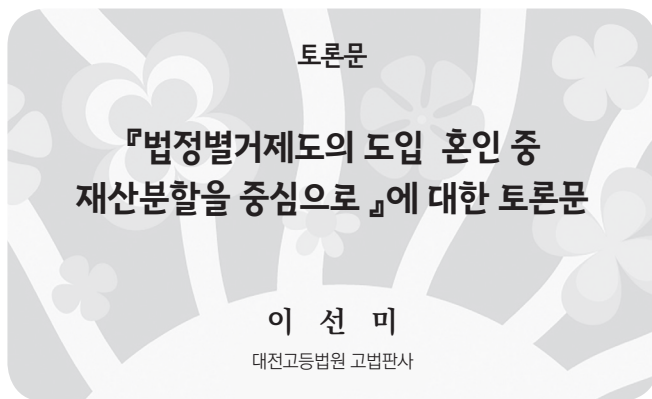
V. 맺음말

법정별거는 가톨릭의 영향으로 “혼인은 해소될 수 없다”는 혼인비해소의 원칙이 관철되었던 중세 유럽에서 이혼에 대한 대안으로 발달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과 무관한 우리 사회에 지금 별거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역사적,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정별거제도가 우리 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법정별거제도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 사이의 법적인 생활공동체의 성립 및 해소와 관련하여 혼인과 이혼이라는 두 가지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 그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막혀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혼인제도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혼인보다 부담이 가벼운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하거나(예컨대 프랑스, 벨기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별거제도를 운영하는 입법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람 사이의 법적 결합 및 해소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보다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혼인과 이혼 이외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이는 당사자의 자율과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민법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도 종교적 이유, 개인의 도덕관념이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일단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정별거제도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느끼는 부부가 이혼 대신 일단 법정별거를 시작한다면, 이혼 후의 생활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법정별거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 미처 짚지 못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발표자께서는 유럽의 법정별거제도에 관해 상세히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법정별거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 소개해주신 것과 같이 법정별거제도는 ‘혼인 비해소의 원칙’이 존재하던 중세 유럽에서 이혼에 대한 대안으로 발달된 제도이므로 그러한 역사적·종교적 맥락을 공유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민사회 일각에는 일본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졸혼”이라는 사회적 개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법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정별거제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고 충실한 비교법적 연구결과를 제시해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법정별거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실무자로서의 경험에 기반한 토론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법정별거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

가. 발표자의 논거 요약

발표자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법정별거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근거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 ① 혼인과 이혼이라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제도 외에도 그 사이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당사자들로 하여금 혼인과 이혼 외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여 당사자의 자율과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민법의 정신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 ② 법정별거제도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여러 이유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느끼는 부부가 이혼 대신 법정별거를 경험하도록 할 경우 이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토론자의 의견

발표자의 위 견해는 경청할 부분이 충분히 있으나,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정별거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합니다.

1) 가족제도에서 사적 자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사적자치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재산법과 가족법에서 구현되는 범위와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산법적 생활관계에서는 개별적인 계약을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것이 사적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법적 생활관계, 특히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기초적인 사회제도를 형성하고 해소하는 것에 관계된 생활관계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해 좀 더 많은 제약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제도로서 인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제도 외적인 부분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상태로서 인정은 하되 제도에 상응하는 법적 승인과 보호를 부여하지는 않는 영역으로 남겨둘 것

유럽 국가(이탈리아, 프랑스)의 법정별거제도

국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재산분할	상속
이탈리아	공동친권 원칙적 공동양육 면접교섭, 양육비 인정	혼인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는 부양요청구 가능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부양요청구 불가능(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만 가능)	별거 시 재산분할 가능 별거로 부부공동재산제 해소	원칙적으로 상속권 인정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상속권 없음
프랑스	공동친권 양육에 관한 협의 또는 재판으로 결정 면접교섭, 양육비 인정	부양요청구 가능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중대한 혼인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부양요청구 배제될 수 있음	별거 시 재산분할 가능 별거로 부부공동재산제 해소	상속권 인정

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로써 금지하여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축첩행위가 당사자의 의사 합치 하에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대리모와 의뢰모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대리모계약에 따라 대리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의뢰모의 친생자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르15371 판결)은 사적자치가 우리 사회의 기본 이념에 명백히 배치되어 멈추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별거는 사실상의 상태로서 인정하되 제도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부부가 별거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지 않는 한 국가가 별거상태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이를 혼인이나 이혼과는 별도의 효과를 가지는 제도로써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적자치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혼인이라는 가족제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상태만이 가능할 뿐 그 중간적 상태는 상정 가능하지 않거나 제도 및 사회의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제도는 당사자의 사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 계약에 그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등 공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기초적·기본적 제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가족제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신장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보호 가치가 있고 다른 사회제도와 조화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일정 부분 벗어나려는 욕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욕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가) 우리의 법정별거제도 개념 도출의 필요성

발표자가 소개해주신 유럽 여러 국가(이탈리아, 프랑스)의 법정별거제도는 그 효과(별거의 결과)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해주신 내용을 거칠게 정리해보자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법정별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법정별거제도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법정별거제도의 법률효과를 법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 나라들과 다른 역사와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정별거제도의 개념을 새로이 도출해내어야 합니다.

나) 소위 ‘졸혼’의 내용 및 문제점

실무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졸혼’을 언급하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 자녀를 다 키워놓아 양육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주로 장년 이상의 부부 사이에, (ii)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되 생활은 달리하면서, (iii) (주로 아내에 해당하는)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할 재산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에게 혼인공동재산 일부를 지급하고, (iv) 서로 부양은 하지 않거나, (주로 아내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 물론 이는 토론자가 접한 가사사건을 통해 유추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내용이 우리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졸

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³⁷⁾

토론자의 한정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린다면, '졸혼'은 생활은 따로 하되 혼인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따라서 졸혼이 시작될 때 (주로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부부공동재산의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않으며,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졸혼 이후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서로간에 완전히 허용하지는 않으면서도 방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파탄된 혼인관계에 대해 법적인 의미에서의 해소만을 하지 않고 놓아둠으로써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여러 가지 청산을 미루어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사자의 정당한 욕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실무자로서 접한 사안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처리한 후 각자 새출발을 하면 좋았을 것을, 당장 갈등상황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만 유지한 채로 두다가 결국 쌍방 합의되지 않은 시점에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의 정당한 청산도 어렵게 되어 안타깝게 여겨지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

다) 유럽식 법정별거제도 개념을 차용할 경우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졸혼'을 유럽 국가의 법정별거제도와 유사한 내용, 즉 (i) 별거하되, (ii) 자녀는 공동으로 양육하고, (iii) 혼인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 배우자는 부양료를 받을 수 있으며, (iv) 별거 시 재산분할을 하고, (v) 법정별거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가 법제도로 받아들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하여 보자면, 우리 법제도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반드시 일방의 단독친권·단독양육만이 가능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이혼 실무에서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동양육을 위해서는 이혼이 아니라 법정별거를 인정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한 후에는 공동양육에 협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법정별거의 경우에는 공동양육의 실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정별거 역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막연히 이혼보다는 법정별거가 당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정별거기간 중 부양료 지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 없이 내쳐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부양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구시대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 정당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의 변화된 결혼생활의 모습(특히, 남녀 모두 직업을 가지고, 가사와 육아뿐만 아니라 생활비 조달도 분담하는 젊은 세대의 결혼생활)에 비추어 보면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사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졸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장년 이상 노년층의 부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졸혼'을 할 경우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간 형성된 재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고 연금 등 소득을 얻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부양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돌봄을 통해 부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³⁸⁾ 그런데 '졸혼'에 들어가 별거함으로써 한 쪽의 부양의무는 면제하면서도 다른 쪽의 부양의무는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제에 비추어 보면, 법정별거를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변화가 될 것이고 그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 차후 추가적인 재산분할 가능성 및 상속권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정별거 시점에 혼인공동재산의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 별거 상태가 유지되다가 결국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에는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별거 상태가 유지되다가 사

37) 미성년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소위 '기리기 부부'도 '졸혼'과는 다른 형태의 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혼'과는 달리 '기리기 부부'는 대체로 별거 당시 혼인파탄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그 명목으로 하는 점, 따라서 일단은 일정 기간의 별거 후 별거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토론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합니다.

38) 물론, 장년 내지 노년에 이른 부부에게 있어서 남편의 부양의무만큼이나 아내의 부양의무도 그 연령이나 건강상태, 부부 사이의 관계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변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될 경우 상속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미 법정별거 당시 재산분할로써 부부공동재산 중 자신의 몫을 가져간 생존 배우자가 추가로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할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배우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수 있는 현재 상태와는 반대로, 법정별거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한 배우자나 사망 당시까지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한 배우자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하는 제도가 신설되고(민법 제1004조의2), 기여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기여상속인의 기여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는 등(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상속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상속인의 기여가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정별거 시점에 재산분할을 한 후 더 이상 혼인공동생활을 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개념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법정별거 배우자에 대해 법적으로 배우자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3) 법정별거제도가 혼인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혼인관계의 원만한 유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혼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법정별거제도를 통해 일종의 숙려기간을 줌으로써 혼인관계의 회복을 도모할 기회가 가질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혼인관계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실증적 연구결과 등으로 뒷받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법정별거제도가 혼인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제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분쟁이 생긴 사안만을 접하게 되는 실무가의 숙명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토론자가 보기에는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안에서는 결국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을 때 ‘졸혼’ 등의 명목으로 별거하는 것은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르는 여러 쟁점(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단지 일시적으로 미루어두는 것에 불과한 때가 많은바, 토론자의 사견으로는 오히려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쳐야만 관계를 재정립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3. 나가며

이상에서 토론자는 법정별거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토론자의 논지는 법정별거제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혼인이라는 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원만한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도 혼인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여야 한다거나 별거를 금지 내지는 죄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법제도는 결국 개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혼인제도 및 이혼제도가 개인의 행복 추구에 저해가 된다면 이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견으로는, 우리와 역사적·종교적 맥락을 달리하는 외국의 법정별거제도 내지는 그 실체가 모호한 ‘졸혼’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혼인제도(특히 혼인재산제도) 및 이혼제도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것과 함께 현재 마련된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실무를 개선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고 봅니다.

호주제 폐지 2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관계에 관한 여러 제도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발표자의 소중한 발표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집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가정

혼인 성립 때부터 갈등 유발 요인 많고, 34.5% 별거 중

주요 발견 사항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상담 비율,

한국인 남편 55.2%, 외국인 아내 44.8%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상담보다 1.2배 더 많아

연령대,

한국인 남편은 50대, 외국인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아

혼인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 많아

남성 연상 중

17세~30세 차이 33.9%(일반가정 이혼상담 7.4%)

재혼 비율 34.1%(일반가정 이혼상담 9.8%)

외국인 아내의 73.9%,

한국인 남편의 60.2% 안정적 직업 없거나 미상

외국인 아내의 89.7%,

한국인 남편의 77.7% 보유재산 없거나 미상

이혼상담한 다문화가정 부부 34.5%가 별거 중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기타, 가출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가출, 기타, 본인의 아내 폭력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뒤 필요할 때만 내게 연락해!

● 아내의 가출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2011년 중국 여성과 결혼하였다. 처음 몇 달 정도는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았다. 별 다른 갈등도 없었는데 얼마 후부터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반복하더니 급기야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알아보니 서울 다른 곳에 있는 지인에게 있다가 중국에 가는 것을 반복하였다. 출입국 사무소에 찾아가 봤더니 현재도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오기를 반복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것은 아니다. 아내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오고, 내 연락은 절대 받지 않는다. 생활이 곤궁해 구청에 찾아갔더니 상담소를 안내해 주기에 찾아왔다.

외국인 아내

-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수시로 외박! 폭행도 당했는데 이혼은 안 해줘!

● **남편의 폭력, 생활무능력, 잦은 외박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나는 13년 전 베트남에서 왔고,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남편은 돈을 벌지 않았고 아예 구직활동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일주일에 1-2일은 외박을 하였다. 내가 집안일을 다했고, 돈도 내가 벌어 생활비로 썼다. 5년 전에는 남편에게 맞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

한국인 아내

- 사업 목적으로 나와 결혼한 남편!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 **남편의 가출 및 외도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60대 한국 여성)**

2005년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였다. 남편은 한국에 사업을 벌여 놓고 파키스탄에서 거의 거주하였다.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5년 전 파키스탄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아이도 낳았다고 한다. 그 사실을 나는 작년에 알게 되었고, 내가 따져 물으니 작년에 가출해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이다. 나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혼하고 싶다.

외국인 남편

- 아내와 경제갈등을 이유로 이혼 원해!

● **집안 경제 상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아내와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40대 미국 남성)**

4년 전 혼인하였고, 나는 미국국적자이다. 아내와 성격이 달라 많이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갈등이다. 나는 급여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주었다. 그런데 아내는 집안 경제 상황에 대

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현재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아예 알려주지 않는다. 그 외에도 나와 전혀 상의 없이 처가에 수백만원씩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집 공과금을 제 때 내지 않아 연체가 되기도 했다. 다투면서 아내가 나를 폭행한 적도 있다. 현재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혼하고 내가 키웠으면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상담 총 건수는 1,027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826건(80.4%),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1건(19.6%)이었다.¹⁾

**상담소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
실제 서울지역 다문화 이혼 건수 91.5%에 달해**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총 6,022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123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1,027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91.5%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많아 부부가 심각한 대립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절차 및 방식,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다양하게 문의해왔다.

한편,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 사실 자체를 없애고자 혼인무효나 취소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소송 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1.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1)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외국인 아내 방문 44.8%, 한국인 남편 방문 55.2%

1)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여성 96명)도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본국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으로 표기함.

한국인 남편 상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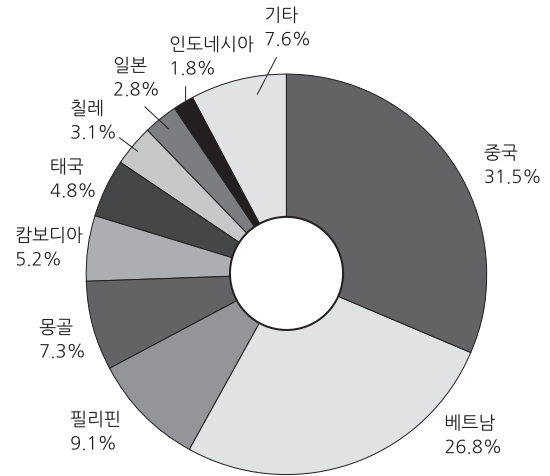
외국인 아내 상담보다 약 1.2배 더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826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70건(44.8%),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456건(55.2%)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2배 더 많았다.

다문화가정 상담에 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년 14.0%, 2008년 27.2%, 2009년 36.1%, 2010년 29.4%, 2011년 37.5%, 2012년 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아(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13년 51.9%, 2014년 51.0%, 2015년 63.2%, 2016년 64.1%, 2017년 65.2%, 2018년 68.4%, 2019년 61.8%, 2020년 65.0%, 2021년 66.2%, 2022년 64.8%, 2023년 54.6%, 2024년 55.2%)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한국 남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태국 순으로 많아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826명 중 중국이 260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221명(26.8%), 필리핀 75명(9.1%), 몽골 60명(7.3%), 캄보디아 43명(5.2%), 태국 40명(4.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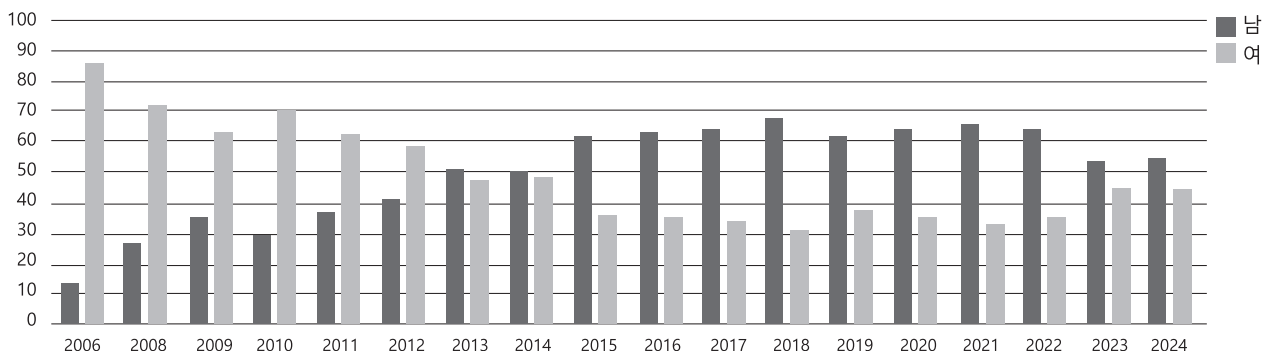
남편은 50대,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33.9%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394명(47.7%), 40대 158명(19.1%), 20대 99명(12.0%), 50대 87명(10.5%), 60대 이상 59명(7.1%)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50대 287명(34.7%), 40대 209명(25.3%), 60대 이상 185명(22.4%), 30대 137명(16.6%), 20대 3명(0.4%)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30명(3.6%),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710명(86.0%),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53명(6.4%), 미상인 경우는 33명(4.0%)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7~30년 차이가 241명(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6년 70명(9.9%), 11~12년 66명(9.3%), 9~10년 56명(7.9%), 1~2년 55명(7.7%), 15~16년 53명(7.5%), 3~4년 52명(7.3%), 7~8년 51명(7.2%), 13~14년 47명(6.6%), 31년 이상 19명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연도별 남녀별 비율



(2.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2년 차이가 27명(5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4년 22명(41.5%), 7~8년 3명(5.7%), 5~6년 1명(1.9%) 순으로 나타났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재혼하였고, 아내와 28세 차이가 난다. 아내와의 사이에 18세 딸이 있고 아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내게 이혼을 요구해왔다. 아내가 베트남 남성과 외도를 했는데 현재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내는 나와 이혼 후 아이의 친부인 그 남성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하였다. 나도 더 이상 아내와 살기 싫어 이혼을 원하고 딸은 내가 키웠으면 한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내담자 40대 베트남 여성)

21세에 베트남에서 왔고, 남편과는 27세 차이가 난다. 남편은 한 번 이혼한 사람 있었는데 나를 가정부처럼 부렸다. 늘 밥 하라고 호통쳤고, 욕을 달고 살았다. 10년 전까지 남편에게 많이 맞았다. 당시 어린 아이까지 때려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센터에 연결되어 관리대상이 되자 한동안은 때리지 않았다. 근래에는 폭언만 하고 폭행은 없었는데 한 달 전 남편이 또 폭행했다. 남편은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더러 젊은 네가 벌어서 살라고 한다.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는데 이후 살 길이 막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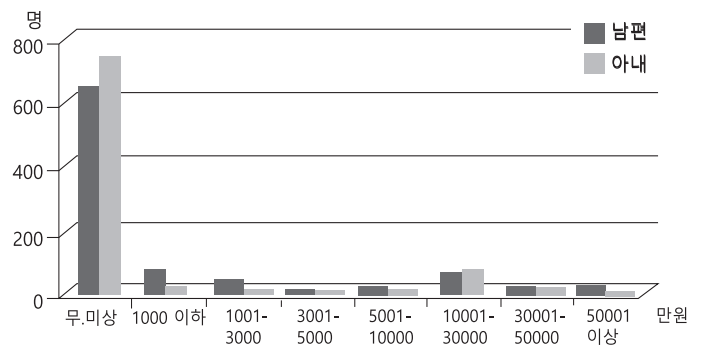
초졸 비율 한국인 남편이 더 높아

외국인 아내는 대졸 이상이 24.0%(198명)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남편은 고졸이 20.3%(168명)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1.1%(9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8.5%(70명)이었고, 중졸도 외국인은 6.3%(52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10.4%(86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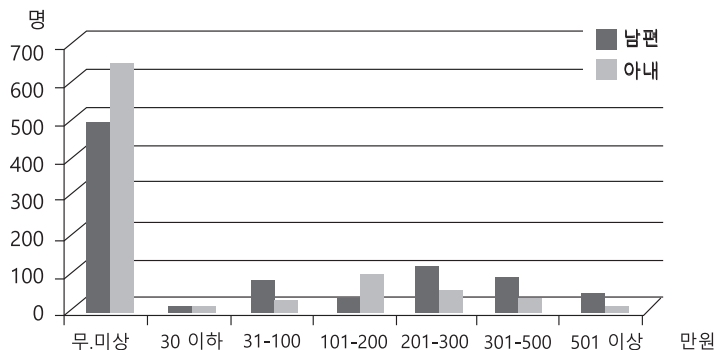
외국인 아내의 73.9%,
한국인 남편의 60.2% 안정적 직업 없거나 미상
외국인 아내의 89.7%,
한국인 남편의 77.7% 보유재산 없거나 미상

외국인 아내는 주부(237명, 28.7%), 한국인 남편은 자영업(156명, 18.9%)이 가장 많았다. 한편, 주부와 무직, 학생,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73.9%, 한국인 남편은 60.2%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89.7%(741명)와 한국인 남편의 77.7%(642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77.8%(643명), 한국인 남편의 59.2%(489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재산 보유액별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월 수입별



다문화가정 상담 재혼 비율 34.1%, 일반 이혼상담보다 재혼 비율 높아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25.8%(213명)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13.6%(112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7.9%(65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12.6%(104명), 미상 40.2%(332명)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4.1%로 일반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9.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44.9%(371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3.4%(28명),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3.1%(26명)로 나타났다.

● 재혼 후 아내와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필리핀 여성과 4년 전 재혼하였다. 상대방에게 전혼자녀가 있었고 상대방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보내줬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쓰러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당장 우리 생활하기도 어려워 상대방 전혼자녀에게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되자 상대방이 불만을 표출했고 그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이후 상대방은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냈다. 얼마 전 상대방은 내 어머니에게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을 끊고 나가버렸다. 갈등이 있어도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돌아오지 않아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다.

● 재혼 후 한국인 남편과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몽골 여성)

나는 몽골에서 왔고 결혼한 지는 14년되었다.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자주 맞았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내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왔다.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 내놓지 않고 나만을 위해 써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 몽골에서 딸을 낳았는데 몽골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해왔을 뿐이다. 남편 또한 내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나도 이혼 원하고 14세인 아들은 내가 키우고 싶다.

전체의 34.5%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혼인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2.3%(19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3.8%(31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6.7%(55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9.4%(78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22.4%(185명), 10년 이상은 35.1%(290명)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4.5%(285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32.6%(93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31.6%(90

명), 3년 이상~5년 미만 16.8%(48명), 5년 이상~10년 미만 9.8%(28명), 1년 이상~2년 미만 7.7%(22명), 2년 이상~3년 미만 1.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50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23명에 달했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46.0%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608명이었고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262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43.1%에 달하였다. 국적취득에 있어서 결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별거 시에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최소한의 협조도 받지 못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이혼을 원하더라도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별거하게 된 경우가 많아 소송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혼상담 사유 분석²⁾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기타, 가출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가출, 기타, 본인의 아내 폭력 순으로 상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224명)

- 1위 '남편의 폭력'(민법 제840조 3호)(77.7%, 174명)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폭언·기물파손,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등이 우선 순위임)'(6호)(11.2%, 25명)
- 3위 '남편의 가출'(2호)(4.0%, 9명)

2) 이하에서는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상담 총 826건 중 이혼 사유를 제시한 481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석하였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257명)

1위 '아내의 가출'(2호)(55.6%, 143명)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무시/모욕, 전과/복역,
도박 등이 우선 순위임)'(6호)(34.2%, 88명)

3위 '본인의 아내 폭력'(내담자 3호, 9.3%, 24명)

※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을 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을 한 경우에는 3호 '남편의 폭력'이 77.7%(17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1.2%(25명), 2호 '남편의 가출' 4.0%(9명), 1호 '남편의 외도'·4호 '내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 각 3.6%(각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4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4,054명)가 제시한 사유는 3호(남편의 폭력 59.1%, 2,39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빚,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순 25.4%, 1,028명), 2호(남편의 가출 9.6%, 390명), 1호(남편의 외도 5.3%, 2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들이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 순위와 다문화가정의 외국 여성들이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의 순위가 같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편의 폭력을 이혼사유로 호소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은 77.7%로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편의 폭력을 호소한 여성의

비율인 59.1%보다 훨씬 높아 다문화가정에서 남편 폭력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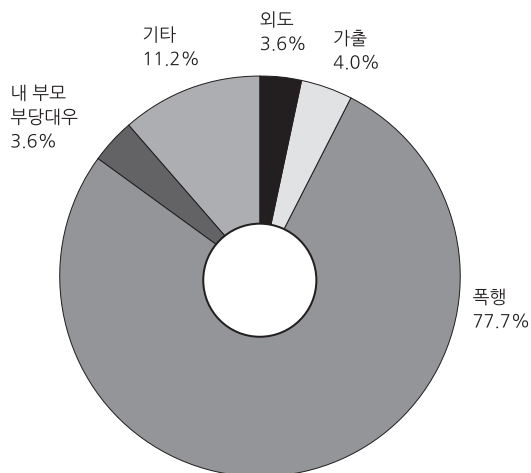
외국인 아내들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한 사유는 6호 '기타 사유'인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5명 중 '폭언'과 '기물파손'이 각 20.0%(각 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배우자의 이혼강요' 16.0%(4명), '장기별거' 12.0%(3명), '경제갈등' 8.0%(2명) 순이었고, 그 외 '생활무능력'·'빚'·'도박'·'의치증'·'알콜중독'·'시가와의 갈등'이 각 4.0%(각 1명)로 나타났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40대 베트남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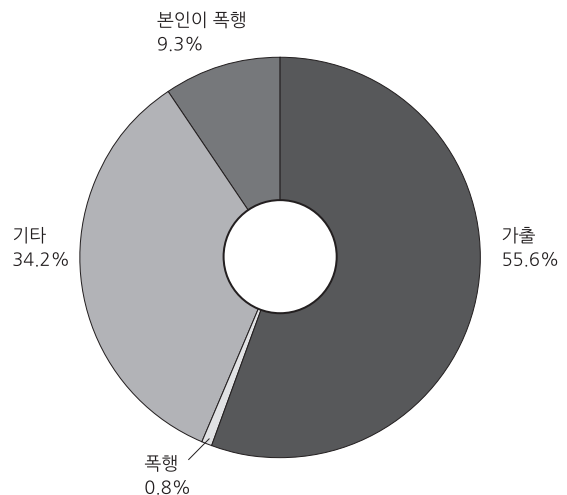
18년 전 결혼하였다.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수시로 나를 폭행하였고 같이 죽자며 약을 사온 적도 있다. 얼마 전에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다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나와 아이는 현재 지인의 집으로 피신한 상태이다. 남편은 60세가 넘었고, 직업도 없다. 이제껏 수급비로 생활해왔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절대 해 줄 수 없다 하였고, 이혼말만 나오면 같이 죽자고 한다. 양육비도 바라지 않는다. 이혼하고 아이만 내가 키울 수 있으면 된다.

● 한국인 남편의 폭언,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내담자 30대 캄보디아 여성)

2019년 캄보디아에서 왔다. 남편이 툭하면 내게 욕설을 퍼부었고 온갖 기물을 파손하였다.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



아내가 상담



남편이 상담

로 무시, 모욕도 심했다. 남편 공장에서 몇 년 간 일도 했는데 받은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남편은 늘 나를 괴롭혔고 심지어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결국 얼마 전에 쫓겨 나와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 이상 나도 그런 남편과 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 한국인 남편의 가출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7년 전 베트남에서 왔고, 남편과는 26세 차이가 난다. 결혼 후 남편은 돈을 번 적이 없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나가서 계속 일을 하였다. 아이를 낳은 직후에도 남편은 집안일을커녕 내가 일하고 오면 늘 밥을 차리라고 요구하였다. 심지어 돈도 요구해 남편 용돈까지 내가 다 주었다. 아이만 돌봐줘도 내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 늘 돈에 허덕였고 돈이 부족하면 늘 욕을 해댔다. 그러다가 4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나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을 한 경우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을 한 경우에는 2호 '아내의 가출'이 55.6%(143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34.2%(88명), 내담자 3호 '본인의 아내 폭력' 9.3%(24명), 3호 '아내의 폭력' 0.8%(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4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1,011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 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알콜중독,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순 54.0%, 546명), 2호(아내의 가출 27.2%, 275명), 3호(아내의 폭력 13.6%, 138명), 1호(아내의 외도 4.6%, 47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남편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사유는 '아내의 가출'로 전체의 55.6%를 차지하였다. 또한, 두 번째 사유인 6호 사유 중에서도 '장기별거'가 가장 많아 이혼 상담을 하러 온 한국인 남성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담을 통해 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소

득활동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한 갈등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잠적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한국인 남성들은 이혼을 원해도 상대방의 행방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성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도 많았는데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어도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 제한이 있어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 남편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88명 중 '장기별거'가 61.4%(5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3.6%(12명), '무시/모욕' 5.7%(5명), '전과/복역' 4.5%(4명), '도박'·'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각 3.4%(각 3명), '배우자의 이혼강요' 2.3%(2명) 순이었고, 그 외 '혼수시비'·'경제갈등'·'찾은가출'·'대화 단절'·'동성애'가 각 1.1%(각 1명)로 나타났다.

● 아내의 가출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오래 전 중국 여성과 혼인하였다. 한국말도 서툴고 생활양식도 달라 갈등이 많았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자 바로 집을 나가 버렸다. 즉시 경찰서에 가서 가출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연락 없이 지내고 있다. 나는 경비일을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다. 현재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했더니 배우자가 있어 어렵다고 한다. 이혼하고자 당시 가출신고했던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오래 되어 기록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한다.

● 상대방의 입국거부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3개월 후 비자신청을 위해 베트남으로 건너갔는데 그 때 상대방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혼인의사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아이 낳고 결혼생활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국을 가기 위한 비자가 필요한 사람 같았다. 또한, 내게 처음부터 매달 얼마씩 달라 하였다. 내가 빌라에 살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했더니 아파트가 없느냐며 화를 내었다. 다이아반지와 비싼 핸드폰도 사 주었는데 상대방이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도 그런 태도를 가진 여성과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 **아내 폭행 후 이혼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해온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3년 전 혼인하였고, 현재 두 살된 아들이 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한 욕설을 해댔고 어린 아이 앞에서도 난동을 부리곤 하였다. 얼마 전에도 아내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려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아내의 따귀를 때리게 되었다. 그러자 아내는 내게 돈을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이혼은 안 한 채 돈만 부담하라고 하였다. 아내는 베트남에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 아내의 성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상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상담(총 1,027건) 중 19.6%(201건)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외국인 남편의 상담보다 21.3배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상담 201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9건(4.5%),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192건(95.5%)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21.3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미국, 일본, 파키스탄, 대만,

나이지리아 순

그 외 가나, 태국, 베트남·러시아, 에콰도르·독일·캐나다 등 다양해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201명 중 중국이 53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 41명(20.4%), 일본 30명(14.9%), 파키스탄 28명(13.9%), 대만 8명(4.0%), 나이지리아 7명(3.5%), 가나 6명(3.0%), 태국 5명(2.5%), 베트남·러시아 각 4명(각 2.0%), 에콰도르·독일·캐나다 각 2명(각 1.0%), 필리핀·스리랑카·방글라데시·인도·이집트·우즈베키스탄·콩고·몽골 각 1명(각 0.5%)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편의 본국

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가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태국 순이었던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미국, 일본, 파키스탄, 대만, 나이지리아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혼상담 사유 분석³⁾

외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4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경제갈등, 장기별거)’(6호)(50.0%, 2명)

2위 ‘아내의 외도’(1호)·‘아내의 가출’(각 25.0%, 각 1명)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176명)

1위 ‘남편의 가출’(2호)(52.8%, 93명)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거짓말·경제갈등·불성실한 생활 순)’(6호)(27.8%, 49명)

3위 ‘남편의 폭력’(3호)(18.8%, 33명)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경제갈등, 장기별거)’가 50.0%(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내의 외도·아내의 가출 각 25.0%(각 1명) 순이었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2호 ‘남편의 가출’이 52.8%(93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7.8%(49명), 3호 ‘남편의 폭력’ 18.8%(3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49명 중 ‘장기별거’가 77.6%(3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 16.3%(8명), ‘거짓말’·‘경제갈등’·‘불성실한 생활’ 각 2.0%(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3. 주요 발견 사항 요약

2024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상담 총 건수는 1,027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3) 이하에서는 남편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상담 총 201건 중 이혼 사유를 제시한 180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석하였다.

826건(80.4%),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1건(19.6%)이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총 6,022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123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1,027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91.5%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1)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70건(44.8%),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456건(55.2%)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2배 더 많았다.

(2)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826명 중 중국이 260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221명(26.8%), 필리핀 75명(9.1%), 몽골 60명(7.3%), 캄보디아 43명(5.2%), 태국 40명(4.8%) 순으로 나타났다.

(3)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일반가정은 남편이 1~2년 연상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 연상 중 17~30년 차이, 일반가정 7.4%/다문화가정 33.9%).

(4)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1.1%(9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8.5%(70명)이었고, 중졸도 외국인 아내는 6.3%(52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10.4%(86명)로 나타났다.

(5) 외국인 아내의 89.7%와 한국인 남편의 77.7%가 보유 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73.9%, 한국인 남편의 60.2%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9.8%였으나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34.1%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비율이 높았다.

(7)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4.5%(285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32.6%(93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31.6%(90명), 3년 이상~5년 미만 16.8%(48명), 5년 이상~10년 미만 9.8%(28명), 1년 이상~2년 미만 7.7%(22명), 2년 이상~3년 미만 1.4%(4명) 순으로 나타났다.

(8)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기타, 남편의 가출 순으로 많았고, 한국인 남편이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아내의 가출, 기타, 본인의 아내 폭력 순으로 많았다.

김진영 상담위원

〈 2025년 5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집단상담	5/7	10명	관계의 정석, 내 탓도 있다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5/14	8명	관계의 정석, 자네가 잘 해야 돼	
		5/21	8명	관계의 정석, 원하는 걸 주는 게 사랑	
		5/28	7명	관계의 정석, 내가 닳고 싶은 사람	
	동지교실	5/7	61명	나에게 잘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마음, 미안함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피해자의 상담 참여로 역동적 변화 생겨, 서로의 차이 인정하고 변화하며 관계 개선

2021버2***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집단상담 3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실시)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집단상담 1회(화상으로 실시)

부부상담 6회 등 총 15회

상담기간

2022. 4. 18. ~ 2022. 11. 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5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1남(9세)이 있다. 피해자는 행위자와 교제 중 임신하였는데 행위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친정 식구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숨기다 임신 7개월 때 조산하였다. 치료비 등 병원비는 친정에서 부담하였고 퇴원 후 잠시 친정에서 살았으며 모자원에서 4년간 생활하다 행위자와 피해자 및 아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

행위자는 2021년 7월 사건당일 사회공헌 활동 준비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책상 모서리에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는 가정폭력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초상담시 갈등원인을 자신이 공격적, 명령조로

대화하고 피해자와 생활방식이 다른 점에 기인한 다툼 때문이라고 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폭력대화를 중단하고 비폭력대화를 이해, 실천하게 되기를 바랐다. 피해자는 갈등원인에 대해 행위자를 불신하며, 행위자가 자신을 아내로 존중하지 않고 폭력대화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행위자가 대화법을 개선하고, 자신을 아내로 존중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바람을 수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부부상담에 동의하고 상담에 참여한 이후 상담에 역동이 생겼다. 특히 결혼초기 행위자가 다른 여성과 채팅한 사실을 부인하여 불신이 깊어졌는데 상담 중 행위자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피해자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만족도를 피해자는 0점, 행위자는 10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상담종결시 상대방과의 관계만족도는 부부 모두 5점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보완점으로 행위자의 언행일치, 공격적인 목소리 톤 개선,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바랐고, 자신은 조금한 성질을 조절하는 노력을 더 하기로 다짐하였다. 행위자는 보완점으로 피해자가 정리정돈 등 생활방식을 개선하기 바랐는데 피해자는 이를 인정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다. 행위자는 자신의 가부장성을 인식하게 된 점을 변화로 꼽았고, 피해자의 노력도 유의미하게 평가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 너무 고통스러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하며 남편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혼생활 15년 동안 소득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아이들 양육과 살림을 전담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조). 6개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동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지연 상담위원



〈장손〉

감독 오정민

출연 강승호, 우상전, 손숙, 차미경, 오만석, 안민영



3대에 걸친 대가족이 오랜만에 모두 모인 한여름의 제삿날, 3대 독자 성진(강승호 분)이 서울에서 내려온다. 그전까지 32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딸과 며느리와 손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어도 본체만체하던 할머니 말녀(손숙 분)는 성진이 오자마자 “성진이 왔다, 에어컨 켜라”라며 수선을 피운다. 제사가 끝난 뒤 ‘대구 경북 로컬푸드 연 식품 부문 매출 1위’를 달성한 가업 두부 공장의 운영 문제로 가족 간에 노골적인 신경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성진은 공장을 물려받지 않겠노라 선언한다. 오정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 〈장손〉은 2024년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각본상과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2025년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과 디렉터스컷 어워즈의 올해의 비전상을 수상하는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한국영화로 꼽힌 바 있다.

한국의 픽션에서 대가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현대사와 정면승부한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작은’ 단위를 통해 전체 사회를 넓은 시야로 부감하기 위해 가족 로맨스를 끌어오는 건 피차일반이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동아시아를 뒤흔드는 큰 사건들의 핵심에 위치했고 이후 재건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악습과 구태가 축적되면서 2025년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의 근간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대가족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미래까지도 근심하게 되는 시선을 견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장손〉의 대가족에도 지난 7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경험한 할아버지 승필(우상전 분), 군부 독재 투쟁에 몸담았다가 다리를 다친 뒤 귀향하여 두부 공장을 물려받은 아버지 태근(오만석 분), 두 주먹 불끈 쥐고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자립이 요원한 무명 연기자 아들 성진에 더해 ‘동남아 애들이 싸니까’ 베트남으로 사업 기반을 옮기는 작은고모 옥자(정재은 분)네 부부가 한국 사회의 굼직한 변화를 담담한다. 그리고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늙어버린 할머니, 아이가 없는 데다 남편까지 ‘잡아먹은’ 큰고모 혜숙(차미경 분), 어머니 수희(안민영 분)와 누나 미화(김시은 분) 등은 자신들이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에 짓눌려 있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고통 받은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을 증거한다.

두부 공장을 둘러싼 각 세대의 태도 역시 이들의 삶과 위치를 대변한다. ‘정상’과 ‘손맛’을 중요시하는 헛기침으로 손아랫사람들을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이 집안 어른들의 특권이였다면, 아버지와 고모부 대에서는 ‘현대화’와 ‘자동화’를 주문처럼 입에 달고 다니며 인건비를 어떻게든 깎으려고 버둥거린다. 그리고 아무리 사위가 열심히 일해도, 공장을 물려받는 건 무조건 ‘김씨 집안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모들의 설움은 한계에 달했고, ‘남편을 잡아먹은’ 큰고모는 대가족 사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로 피신하여 종교의 힘으로 마음을 달랠다.

그런 의미에서 〈장손〉의 결말부는 절대로 따뜻한 위안 한 자락이나 나도 모르게 안심하게 되는 종류의 ‘현상 유지’로 향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아주 편했을 것이고, 이 영화는 금방 뇌리에서 잊혔을 것이다. 하지만 결말부에서, 영화에서 자꾸 되풀이되던 ‘젓통 통장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와 ‘화재는 왜 발생한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순간, 관객 모두 아연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죽고 나서도 아무한테 말하지 말 그레이”라는 당부. 만약 추리 소설이었다면 이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그런 짓을 했을까를 남은 이가 추적하고 파헤치는 구조였을 것이다. 〈장손〉에선 그 당부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걸 들은 당사자가 침묵한 채 짓는 굳은 표정으로 끝냄으로써, 당사자(와 관객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린다. 독자이자 장손으로서 가장 사랑받는 특권을 누렸던 성진은, 과연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유지되어 왔던 구조적 착취의 과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중조부모의 텅 빈 무덤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의 명확한 초상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전통이라면서 고수하는 많은 부분이 기실 텅 빈 것이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그 무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무엇으로 채워 넣을 것인가.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열어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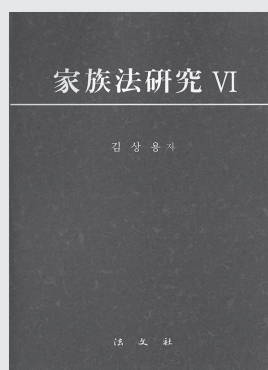
1956년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지난 2005년 호주제폐지를 이루어낸 상담소에서는 그 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3일 본소 강당에서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은 호주제폐지 이후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과 혼인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담론의 장으로 마련되어 변화된 가족과 혼인의 모습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과제를 점검하여 미래 가족법의 대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서 앞에 1970년대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실무자로 가족법 개정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상담소 차명희 이사장의 회고를 함께 듣는 시간을 마련하여 많은 참석자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본 심포지엄은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세 개의 주제와 주제에 따른 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1은 김상용 교수·안문희 연구원(한국법학원)의 연구로 안문희 연구원이 발표한 ‘법정별거제도의 도입 - 혼인 중 재산분할을 중심으로’였으며 토론자로는 이선미 고법판사(대전고등법원)가 참석했다. 주제2는 ‘혼인의 기능에 따른 비혼 생활 공동체의 보호’로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허민숙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석했으며, 주제3은 ‘호주제의 잔재, 자녀의 성과 본’을 주제로 송효진 본부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이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홍닥터 변호사 등 주제에 관심이 깊은 관련 기관 종사자와 학생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많이 참석하여 호주제폐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가족법 개정운동의 과제를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김상용 본소 이사, 『가족법연구 VI』 발간 상담 현장에 도움 주고자 본소에 20권 기증



본소 이사이자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가족법연구 VI』(법문사)를 발간하였다. 이 저서는 현재 가족법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되는 주제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그 쟁

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출산통보제,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미혼부의 권리와 친생부인권, 상속권 상실신고, 유류분, 등록동반자관계 등 우리 사회의 가족의 복리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포괄하고 있어 가족의 변화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족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교수는 2002년 『가족법연구 I』을 발간한 이래 23년에 걸쳐 이 연작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고, 상담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20권을 본소에 기증하였다. 또한 지난 2024년에도 부친 김주수 교수와 공저인 『친족·상속법』[제20판] (법문사)을 같은 취지로 기증한 바 있다.

말의 온도, 관계의 깊이를 바꾸다 - 등지교실

지난 5월 7일 본소 강당에서는 한국감정케어센터 이서원 대표가 진행하는 개인과 가족의 정신 건강 및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강좌 ‘등지교실’이 열렸다. 이번 강의는 ‘나에게 잘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마음, 미안함’을 주제로,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말의 태도를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강사는 “말에도 직선과 곡선이 있다.”라며 직설적인 표현은 때때로 상처를 주지만, 곡선적이고 완곡한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며 갈등을 줄이는 지혜가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써놨어요?”보다는 “혹시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면 상대의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나 가족 사이의 갈등도 결국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에 더 신중해야 하며, 특히 자녀를 대할 때는 결과보다 과정과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쁘게 말하는 것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익혀야 할 소통의 기술이라는 점은 청중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었다.

이 같은 내용에 참석자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다림질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겼다.”,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느끼며, 자기 삶에 더욱 주체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소통 기술을 넘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과 인간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음 등지교실 강좌는 오는 6월 11일, ‘모든 것이 무너지

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을 주제로 본소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5.16.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 애란영스빌
- 박효원 상담위원
- 5.28. 서울 위기임신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5.30.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 애란원
- 고현희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20일 법무부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1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조정을 하였고, 30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5월 1일과 15일, 29일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 사건 등을 조정하였다.

2025년 5월 상담통계

총 건수 4,014

법률상담 (3,488)

면접	전화	인터넷
1,047	2,376	65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397	26	103

• 인터넷 정보 이용 109,547 건

2025년 5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014건이었다. 상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488건(86.9%), 화해조정 397건(9.9%), 소장 등 서류작성 26건(0.6%), 소송구조 103건(2.6%)이었다.

법률상담 3,48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5년 4월에 비해 사실혼해소(0.4%→0.6%), 면접교섭권(1.1%→1.2%), 친생부인(0.5%→0.6%), 입양(0.9%→1.2%), 부양(0.9%→1.2%), 유언·상속(8.6%→

9.2%), 가족관계등록부(2.3%→2.5%), 친양자(0.3%→0.4%), 성변경(0.7%→1.0%), 성년후견(2.5%→3.2%), 가사절차(3.4%→4.1%), 가사기타(16.3%→17.4%), 부동산(0.1%→0.2%), 민사절차(0.0%→0.1%), 성폭력(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48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47건(30.0%), 전화상담 2,376건(68.1%), 인터넷상담 65건(1.9%)이었다.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412

담당 : 김남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60대)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사건본인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잘못 가르쳐 피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건본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의 학대행위는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더욱 심해졌다. 피고는 학대행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2023년 5월경 피고는 책상으로 사건본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사건본인은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악몽을 꾸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원고는 2024년 4월경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5. 5.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0,000 원 및 2025.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4-1-453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70대)와 피고(남, 70대)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하고 2007년 협의이혼하였으나, 2009년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피고는 술만 마시면 원고와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칼을 들고 친척들까지 다 죽인다고 협박하며 원고를 밤새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원고에게 결혼생활은 지옥과도 같았다. 2024년 10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원고의 목을 조르고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칼에 베이고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5. 5.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을 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23.까지 재산분할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되, 미지급 시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썬한 지연손해금을 더

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신고 후 연락이 끊겨 40년간 별거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431

담당 : 김동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40대)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는 일본 국적자이다. 원고는 일본에서 생활하고자 국제결혼업체에서 상담을 받고, 업체에서 소개한 일본인과 혼인하였다. 혼인신고 후 피고는 연락이 두절 되었고, 피고를 소개한 국제결혼업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만 했을 뿐 혼인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불법체류 상태로 일본에서 생활하다 2년 전 귀국하였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의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원고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5.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고맙습니다

2025년 5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문은희,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강민서, 강민지, 강영진, 강재연, 권예지, 권윤아, 김다현, 김도윤, 김민경, 김민서, 김민지, 김서연, 김세림, 김세준, 김세중, 김세진, 김소영, 김수진, 김시연, 김시현, 김안젤라, 김연지, 김주하, 김주현, 김지민, 김지원, 나윤우, 남궁지윤, 남성숙, 노현지, 문정현, 박지수, 배은솔, 배지연, 서현진, 성예정, 송민성, 신이주, 신재원, 안세현, 양승완, 양은진, 윤상철, 이다경, 이다현, 이도현, 이미경, 이서연, 이아정, 이윤미, 이윤섭, 이정인, 이주홍, 이채린, 이홍익, 임성완, 장진혁, 장효정, 정민주, 정준희, 최민제, 최예은, 최하늘, 한소원, 한수희, 허진, 황보선우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최문원, 이현혜, 천정환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2025년 6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7월 10일,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7월 10일	인간의 마음, 사랑과 분노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7월 17일 ~ 19일(2박 3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6월 11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7월 9일	부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월 13일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우리 가족 행복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